
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
최종 개정일자 : 2026-06-01
MSDS 번호 : AA00200-0000001024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 : LDPE XL600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○ 제품의 권고 용도

1. 원료 및 중간체

○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

권고용도 외 사용제한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살생물제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.
무기제조 및 관련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오.

다. 공급자 정보

○ 판매자

회사명 :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

주소 :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

대표번호 : (대산공장) 041-689-5114

긴급전화번호 : (방재실) 041-689-5119

팩스 : +82-41-689-5985

2. 유해·위험성

가. 유해·위험성 분류

- 해당없음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그림문자

- 해당없음

신호어

- 없음

유해·위험문구

- 해당없음

예방조치문구

- 해당없음

비고

- 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 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.

다.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:

경험과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, 이 제품은 규정대로 사용 및 취급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 No.	KE No.	함유량(%)
Polyethylene	Polyethylene, Ethene polymer, Ethene, homopolymer	9002-88-4	KE-28877	>=95 ~ <=100

4. 응급조치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으십시오

자극이 발생되고 지속될 경우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

다. 흡입했을 때

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.

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

라. 먹었을 때

우연히 삼킨 경우,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사고가 났거나 몸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부적절한) 소화제

○ 적절한 소화제

대형 화재: 물분무/안개, 일반포말 (적절한 소화제).

소형 화재: 건조모래, 건조화학적제, 내알콜포말, 물분무, 일반포말, CO2 (적절한 소화제).

현지 상황과 주위 환경에 적절한 소화방법을 사용하십시오

- 부적절한 소화제
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강한 물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열분해성 생성물
자료없음
- 화재 및 폭발 위험
열이나 화기에 의해 독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
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습니다.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화재가 발생한 경우,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분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물질이 하수구나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적절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하십시오.

폐기물 취급 및 수거시 분진을 일으키지 마십시오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
개인보호장비는 8항을 참조하십시오.

사용 지역에서는 흡연, 먹고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어야 합니다.

나. 안전한 저장방법

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시오.

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-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작업장에 적절한 배기 및 환기가 이루어 지도록 하시오.

다. 개인보호구

○ 호흡기 보호

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증받은 알맞은 형태의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○ 눈 보호

작업 환경이나 활동 상 먼지나 연무 또는 에어로졸이 많은 조건이 개입될 경우,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.

○ 손 보호

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 하십시오.

○ 신체 보호

보호 장갑/보호복/보안경/보안면/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항목	내용	출처
외관		
성상	고체	
색상	백색	
냄새	무취	
냄새역치	자료없음	
pH	해당없음	
녹는점/어는점	녹는점/범위 85 - 140 °C	

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(°C)	해당없음	
인화점(°C)	> 221 °C	
증발속도	해당없음	
인화성(고체, 기체)	자료없음	
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해당없음	
증기압	해당없음	
용해도	용해되지 않음	
증기밀도	해당없음	
상대밀도	자료없음	
n-옥탄올/물분배계수	자료없음	
자연발화온도	> 300 °C	
분해온도	자료없음	
점도(mm ² /s, 40°C)	자료없음	
분자량	> 1,000 g/mol	
밀도	0.91 - 0.97 g/cm ³	
비중	0.91 - 0.97	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일상 온도 및 압력조건에서 안정합니다.

지시된 대로 보관하고 적용시 열분해 되지 않습니다.

나. 피해야 할 조건

예방조치를 준수하고 혼재불가능한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십시오.

다. 피해야 할 물질

가연성 물질

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본 제품은 해당지역 특정 부처가 정한 생물학적 한계치를 갖는 어떠한 유해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자료없음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○ 급성독성

● 급성독성물질(경구)

- LD50 >8000 mg/kg 실험종 : Rat

● 급성독성물질(경피)

- 자료없음

● 급성독성물질(흡입:가스)

- 자료없음

● 급성독성물질(흡입:증기)

- 자료없음

● 급성독성물질(흡입:분진/미스트)

- LC50 75.5 mg/l 30 min 실험종 : Rat

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호흡기 과민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피부 과민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발암성물질

- 3 (IARC)

○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생식독성 물질

- 자료없음

- 특정표적장기·전신 독성 물질(1회 노출)
 -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·전신 독성 물질(반복 노출)
 - 자료없음
- 흡인유해성 물질
 - 자료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-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
자료없음
-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
자료없음
- 어류
자료없음
- 갑각류
자료없음
- 조류
자료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분해성
자료없음
- 생분해성
자료없음

다. 생물농축성

- n 옥탄올/물 분배계수
자료없음
- 생물농축계수
자료없음

라. 토양 이동성

자료없음

- 마. 기타 유해 영향
자료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방법
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합니다.
- 나. 폐기시 주의사항
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.

인가받은 폐기물 관리업체에 보내십시오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유엔번호(UN No.) : 해당없음
- 나. 적정선적명 : 해당없음
-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
- 라. 용기등급 : 해당없음
- 마. 해양오염물질 : 해당없음
-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:
 -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없음
 -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없음
- 육상운송(ADR)
 - Tunnel restriction code : 해당없음
- 해상운송(IMDG)
 - 해양오염물질 : 해당없음
- Air transport(IATA)
 - 유엔번호 : 해당없음
 - 유엔 적정 선적명 : 해당없음
 -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
 - 용기등급 : 해당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해당없음

다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

-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

- 해당없음

-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

- 해당없음

- 중점관리물질

- 해당없음

- CMR기존화학물질

- 해당없음

- 기존화학물질

- 해당

- 유해성미확인물질

- 해당없음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해당없음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해당없음

-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EU - REACH (1907/2006) - Article 59(1) -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(SVHC) for Authorisation

- unlisted

- Regulation (EU) 2019/1021 POPs (Persistent Organic Pollutants)

- unlisted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기후에너지환경부, 고용노동부, 몬트리올 의정서, ECHA, OECD SIDS, EU IUCLID, HSDB(PubChem), NITE, NTP, ACGIH, IARC, NIOSH, ChemIDplus, EPA, EPIWIN, INCHEM

나. 최초작성일자 : 2021-08-19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개정 횟수 : 3-1

- 최종 개정일자 : 2026-06-01

라. 기타

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현재 당사 최선의 지식, 정보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본 정보는 제품 자체를 보증하는 기술자료가 아니며, 단지 안전한 취급, 사용, 처리, 보관, 운송, 폐기 및 배출 등에 관련된 지침입니다. 본 정보는 구매자, 취급자 또는 제3자의 화학물질 취급에 도움을 주고자 권고되지 않는 용도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상업적 적용이나 표현 및 기술적인 법적 책임도 질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내용 및 형식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구매 및 취급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본 MSDS의 최신 버전은 롯데대산석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www.ldpc.co.kr)

KOR/KO